



새로운 언론중재법

구제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신문, 방송, 잡지, 통신은 물론
 인터넷 보도로 인한 피해까지
 구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넓어진 피해구제 범위

새롭게 도입된 중재제도

조정제도와 함께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구제제도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 및
 전자우편으로도 조정 및 중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양해진 신청 방법

길어진 신청 기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을 후 6개월 이내로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상담원으로 구성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해드립니다.
 전화문의 02) 397-3000, 3010, 3100 인터넷 실시간 상담센터 www.pac.or.kr